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0,960,671	12,928,820
일반회계	382,933,343	11,488,000
특별회계	48,027,328	1,440,820
공기업특별회계	40,409,367	1,212,281
상수도공기업	15,670,785	470,124
하수도공기업	24,738,582	742,157
기타특별회계	7,617,961	228,539
의료급여기금운영	1,172,300	35,16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01,166	12,035
수질개선	517,003	15,510
농공지구조성사업	2,468,802	74,064
공영개발사업	444,271	13,32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0,655	3,320
주택사업	1,973,198	59,196
기반시설	17,890	537
장기미집행	512,676	15,3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05,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3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